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436
------------	------

2021년 6월 16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정진철 의원 외 8명

나. 제안일자 : 2021년 5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1년 6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진철 의원)

가. 제안이유

-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정의 및 재정지원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매년 시행방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법제화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버스회사의 경영 건전화를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재정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외부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재정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서비스 개선과 안전운행 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 폐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부칙안 제2조 및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4 ~ 2021. 6. 11
- 의견있음(별도 첨부)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¹⁾ : 수정 가결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있음
 - 2021.5.27. 가이드라인 초안 통보 및 의견수렴 중
 - 의원발의된 조례에 우리시안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고 추후

1) 버스정책과-17836(2021.6.9.)

가이드라인 확정시 추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수정의견

- 수공협 독립 운영 및 수공협 감독위원회 관련 규정
- 재정지원 중단 관련 사유 추가(임원의 중대 범죄행위, 평가하
위 지속 회사 등

[별첨] 입법예고 의견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요약
<p>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 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2조제3호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수공협수입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반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차량(CNG버스/수소버스/전기버스 보조금) 구입에 따른 보조금은 수공협에 입금할 수 없고, 제작사에 바로 지급되고 있음. ○ 안 제14조제2호부터 제5호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결정 취소 또는 환수방식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이 많음. ○ 안 제15조제1항은 준공영제 협약서의 적정이윤 보장에도 위배되고, 경영자가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사용되어야 할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불합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사업이윤의 제도적 보장』으로 기본이윤을 보장받아 왔으나, 준공영제가 진행되면서 서울시가 기본이윤의 일부를 성과이윤이라는 항목으로 사업자가 서울시 업무에 따라서 성과이윤 제도에 협조하는 것임 ○ 안 제18조는 이중처벌, 과잉처벌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치 소홀’, ‘중대한 과실’, ‘고의’ 등의 해석과 기준이 모호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버스사업자의 기본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 ○ 이외에도 일부 조항에 대한 조례안 문구 수정 등 요청함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 요

- 동 조례안은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 기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의 규정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사업자 관리 등의 내용을 동 조례에 포함시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제정의 필요성 관련

- 서울시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개편과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버스체계 유지와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 왔으나,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버스회사만 배불리는 제도라는 부정적 여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20년까지 누적지원금 8조 6,701원, 연간 4,817억원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되어 왔고,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운수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지원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참고 : 연도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원)

년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재정소 요액	1,246	2,707	2,556	2,309	2,729	3,391	3,578	4,882	5,123	5,271
년도	'14	'15	'16	'17	'18	'19	'20	'21	누적	연간
재정소 요액	6,211	6,227	5,907	5,581	5,491	3,627	7,313	12,552	86,701	4,817

※ 서울시 자료 중 일부

※ '21년 재정소요액은 전망치임

-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04년 서울시와 서울시내버스조합이 체결한 협약²⁾을 기본으로 수입금 배분 및 관리 등을 지침³⁾ 및 내부방침 등에 따라 운영되고, 협약체결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일부 사문화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적정이윤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나치게 사업자 편의 위주로 만들어 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 보다 늦게 준공영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도 조속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⁴⁾

2) (가칭)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개편 협약서(2004.2.4.)

- 협약 당사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주요내용 : 10개 구간선노선축 입찰제 시행, **적정사업이윤의 제도적 보장**, 잉여차량 발생시 적정보상, 부채처리 대책, 57개 업체 기존사업면허는 사업내용만 변경하고 보장, 기타

3)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자 운송수입금공동관리 지침(2014.12.19. 개정)

- 주요내용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운영**,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수입금 배분**, **운행비용 정산**, **운송사업체 점검** 등

- 따라서,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단순한 협약이나 지침이 아닌 조례에 근거한 운영사업으로 정하고 재정지원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정하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적용범위 관련 (안 제1조~ 제5조 관련)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적용범위)는 조례의 목적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에 대한 정의, 시내버스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관리 등을 위한 서울 시장의 책무,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장치마련 및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 보조금 지급에 대해 타 조례 보다 우선 적용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무분별한 재정지원에 따른 회사의 방만 경영과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점을 감안할 때,

4) 지자체별 준공제 시행 및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명	시행일	조례 제정일	지자체명	시행일	조례 제정일
서울시	2004.7	-	경기도 용인시	2018.4	2021.4.29
경기도	2018.4	2018.1.11	인천광역시	2009	2019.9.23
광주광역시	2006.12	2020.3.1	제주특별자치도	2017.8	2019.12.31
대구광역시	2006.2.	2015.12.30	충청북도 청주시	2021.1	2020.10.8
대전광역시	2005.7	2019.12.27	경기도 파주시	2018.4	2020.6.12
부산광역시	2007.5	2019.1.1			

※ 시행일 : 나무위키 자료 일부, 조례 제정일 : 국가정보센터

‘ 시내버스 준공영제 ’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개선 및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서울시장과 사업자의 노력을 책무로 규정하는 동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최근 사모펀드 운영사가 서울시를 비롯한 준공영제 운영지역의 버스회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⁵⁾ 이를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전무한 실정임

버스회사 인수가 사인 간 거래영역이기는 하나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버스회사는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제4조(사업자의 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조례 제12조(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제15조(성과이윤의 지원)에서 ‘ 성과이윤 ’⁶⁾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등 제2조(정의)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보도자료, 한국경제, 신생 PEF 차파트너스, 버스회사 9곳 잇달아 인수...최대 사업자 등급(2020.12.10.)

- 동아운수 지분 100% 620억에 인수 계약
- 2년간 서울·인천·대전 시내버스 사들여...총 900여대 확보(서울 한국BRT 포함)
- 준공영제 버스회사 ‘ 타깃 ’...“대형화로 비용절감해 수익률 제고”

6) 제12조(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②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성과이윤의 지원)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에게 성과이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한 성과이윤의 일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고용된 운수종사자를 비롯한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및 수입금 공동관리 관련 (안 제6조~ 제7조 관련)

- 안 제6조(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 및 제7조(수입금 공동관리)는 수입금 관리 및 배분, 표준운송원가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협의회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및 운송관련 물품 구입 등을 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단순히 서울시 지침⁷⁾에 따라 다수의 사업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기존 협의회 운영이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관할로 운영되고 있어⁸⁾ 수입금 관리 및 재정지원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오해가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협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서울시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자 운송수입금공동관리 지침

8) 제7조(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① 업체간 균형발전과 버스서비스 향상 등 버스운행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내에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공동관리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체의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 하며, 공동관리업체협의회의 모든책임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진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관할 관청이 별도로 정하고 수입금공동관리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기구설치를 필수로 하는 내용의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통보한 바 있음⁹⁾

■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 관련 (안 제8조~제8조의2 관련)

- 안 제8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는 시장이 2년마다 전문기관 등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로부터 요구할 수 있으며,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안 제8조의2(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 관련)는 시장이 자가차고지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표준운송원가로 산정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 안 제8조와 제8조의2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명기된 내용을 일부 반영¹⁰⁾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가 시행 중인 사항을 반영하는 규정임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9)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작성관련 지자체 의견 조회(버스정책과-16238, 2021.5.27.)

10) 제3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시장은 2년 단위로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변동되는 사항(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제반 법·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비용 변동 포함)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정산 반영한다.

1. 재무제표
 2. 경영실태 자료
 3.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지출내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 ② ~④ (생략)

- 다만, 안 제8조에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검증을 회계 관련 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는 단체도 수행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자가 시행할 경우 표준운송원가가 과다 산정될 우려가 있는 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정한 용역 수행을 위해 검증 기관을 조정·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8조의2(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는 표준운송원가를 구성하는 13개 항목 중 하나인 “차고지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 검증 용역 및 관련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요율이 매년 변경될 수 있고, 13개 항목 중 ‘차고지비’ 항목만 조례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문제와 용역 결과에 따른 적정요율 적용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문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참고 :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구성¹¹⁾



11) 이창·장지은, 2015,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정착 위한 제도화 타당성」, 서울연구원

■ 재정의 지원 관련 (안 제9조 관련)

- 안 제9조(재정의 지원)는 시장이 표준운송원가에 근거하여 미치지 못한 수입금과 실제 지출액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임
-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이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표준운송원가에 근거한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보조하고 있음¹²⁾
- 따라서, 사업자가 운송수입금 부족액에 대해 신청하고 시장이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반영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재정지원 외의 경비에 대해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서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버스도색 등 버스시설 개선비용” 등 일부 경비 지원¹³⁾에 대한 위원회의 별도

1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 대상)

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나.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이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

13)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 대상)

~심의·의결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례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정산·보고, 외부감사,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조사 관련 (안 제10조~제13조 관련)

- 안 제10조(정산·보고), 제11조(외부감사), 제12조(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제13조(조사)는 협의회와 사업자로 하여금 재정지원금에 대한 정산 및 보고의무를 정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체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 시행의무,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이윤 차등지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협의회와 사업체에 대한 시장의 조사 권한을 규정한 것임

- 안 제10조부터 제13조의 내용은 협의회와 사업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시장의 사후책무를 정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 제4조부터 제6조를 근거¹⁴⁾로 관련 사항을 시행 중이며 이러한

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버스의 고급화·다양화를 위해 저상버스 등의 도입으로 인한 구입비와 일반버스 구입비와의 차액

나.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이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버스도색 등 버스시설 개선비용

라.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1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외부회계감사)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

조사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¹⁵⁾

- 따라서, 동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항을 반영하고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재정지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성과이윤이 필수 지급되는 기본이윤이 아닌 말 그대로 성과에 따른 이윤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재정지원금의 환수 관련 (안 제14조 관련)

- 안 제14조(재정지원금의 환수)는 시장이 사업자에게 지원한 재정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6조¹⁶⁾에 따르면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업자에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정보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 중 실비정산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5) **제8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즉각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제외)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즉각 환수 조치할 수 있고 환수조치 당한 사업자는 1년간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을 통해 재정지원금에 대한 사후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행정협조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2호부터 제5호와 같은 행정협조 거부시 명확한 환수액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자칫 사문화될 우려가 있는 바, 구체적인 환수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성과이윤의 지원 관련 (안 제15조 관련)

- 안 제15조(성과이윤의 지원)는 제12조 평가결과와 제13조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성과이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체 경영평가와 시장이 시행하는 조사업무 협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제4항에서 재정지원금이 환수된 경우 3년간 성과이윤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된 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6조17)에 따르면 재정지원금 환수시 1년간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 해석상 충돌이 발생

17) 제6조(자금의 보조 또는 용자) ①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자한다.

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즉각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4호나목의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당한 사업자는 1년간 성과이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 않도록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 안전운행 증진을 위한 시책 관련 (안 제16조·제17조 관련)

- 안 제16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 제17조(안전운행 증진을 위한 시책)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및 안전운행 증진을 위한 시장의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준용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관련 (안 제18조 관련)

- 안 제18조(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관련)는 사업자가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받거나 음주 또는 난폭운전 등 중대 사고를 유발하여 준공영제 운영 질서를 저해한 경우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다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여 시내버스 안전한 이용환경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음주 및 난폭 운전 등의 사고와 관련된 직접적 위법행위 외에도 임원의 횡령, 배임,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논란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서울시외 준공영제 조례를 시행중인 10개 시도의 경우 재정 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이 아닌 “일정기간 준공영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⁸⁾

■ 준용, 시행규칙 관련 (안 제19조·제20조 관련)

- 안 제19조(준용), 제20조(시행규칙)의 경우 동 조례안에 누락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준용기준 및 필요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18) (예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준공영제 제외) ① 도지사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의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가. 수정이유

- 제정조례안의 조례상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단 근거 개선,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위한 대형화 등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의 시책 및 시민안전 위해승객의 하차요구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용어를 정리하고 표준운송원가 용역 및 검증을 전문기관이 하도록 하며 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 규정을 삭제함(제2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8조의2)
- 재정지원금 환수 및 성과이윤 지원 및 제외 대한 사항을 정리하고 시내버스 대형화 등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6항)
- 여객의 안전을 위해할 경우 사업자의 의무와 재정지원금 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제7항, 제18조제1항)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항을 삭제함(부칙 제2조, 제3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36
----------	---------

제안년월일 : 2021년 6월 16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조례안의 조례상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단 근거 개선,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위한 대형화 등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의 시책 및 시민안전 위해승객의 하차 요구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골자

- 조례의 용어를 정리하고 표준운송원가 용역 및 검증을 전문기관이 하도록 하며 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 규정을 삭제함(제2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8조의2)
- 재정지원금 환수 및 성과이윤 지원 및 제외 대한 사항을 정리하고 시내버스 대형화 등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6항)
- 여객의 안전을 위해할 경우 사업자의 의무와 재정지원금 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제7항, 제18조제1항)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항을 삭제함(부칙 제2조, 제3조)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공공의 관리기능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운행 계통 등의 조정권한을 가지면서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입금”이란 사업자의 요금수입·이자수입·광고수입·기타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4. “수입금 공동관리”란 전체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배분 및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하는 회사에 동일한 기준으로 운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항목별 단가, 지급방식, 지급시기를 정한 체계를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표준운송원가 상 이윤의 일정부분을 유보하여 연1회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분배하는 부분을 말한다.

제5조 중 “보조금”을 “재정지원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전문기관이나 사업자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제1항~제4항에 따라 산정된 당해연도 확정정산 비용을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정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사업자가 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외하여야 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시장은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위한 대형화 등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시내버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 시내버스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업자 및 시내버스 운전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임원의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된 경우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시내버스 준공영제</u>”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u>공공성 강화</u>를 목적으로 버스 노선, 운행 계통, 요금 등의 조정권한을 가지면서 <u>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버스 운행과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u></p> <p>2. “<u>사업자</u>”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u>」 제3조제1호가목의 <u>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u></p> <p>3. “<u>수입금</u>”이란 사업자의 <u>요금수입·이자수입·광고수입·보조금(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그 밖의 부대사업수입을 말한다.</u></p> <p>4. “<u>수입금 공동관리</u>”란 <u>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시내버스 준공영제</u>”란 <u>공공의 관리기능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운행 계통 등의 조정권한을 가지면서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u></p> <p>2. “<u>사업자</u>”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u>」 제3조 제1호 가목의 <u>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u></p> <p>3. “<u>수입금</u>”이란 사업자의 <u>요금수입·이자수입·광고수입·기타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u></p> <p>4. “<u>수입금 공동관리</u>”란 <u>전체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배분 및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u></p>

5. “표준운송원가”란 수입금 공동 관리에 따라 시내버스 1대당 1일의 운행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자가차고지 등“이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가소유의 토지 또는 타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제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이나 사업자 또는 단체의 용역·검증을 거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5.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하는 회사에 동일한 기준으로 운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항목별 단가, 지급방식, 지급시기를 정한 체계를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표준운송원가상 이윤의 일정부분을 유보하여 연1회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분배하는 부분을 말한다.

제5조(적용 범위) ----- 재정지원금-----.

제8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 전문기관-----.

② ~ ④ (원안과 같음)

⑤ 시장은 제1항~제4항에 따라 산정된 당해연도 확정정산 비용을

제8조의2(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 시장은 “자가차고지 등”을 사용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연간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표준운송원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의 지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대당차고 면적에 한한다.

제14조(재정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수입금을 빠뜨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정산·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재정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사업자가 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5.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과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제15조(성과이윤의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에게 성과이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한 성과이윤의 일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고용된 운수종사자를 비롯한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1년간 성과이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3년간 성과이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6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

① ~ ⑤ (생략)

<신설>

제17조(안전운행 증진을 위한 시책)

제15조(성과이윤의 지원) ① -----

--. <후단 삭제>

② (원안과 같음)

③ -----

----- 제

외할 수 있다.

<삭제>

제16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

① ~ ⑤ (원안과 같음)

⑥ 시장은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위한 대형화 등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안전운행 증진을 위한 시책)

① ~ ⑥ (생략)

<신설>

제18조(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지급
을 중단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운
전 또는 난폭운전의 방지를 위
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

① ~ ⑥ (원안과 같음)

⑦ 시내버스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
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
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 시내버스 내의 위생, 방역에 영
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업자 및 시내버스 운전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
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
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
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
해를 끼치는 행위 등

제18조(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① -

-----.

1. (원안과 같음)

2. 임원의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한 참여나 재정지원금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④ (생략)

제19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삭 제>

② ~ ④ (원안과 같음)

제19조(준용)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원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과 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공공의 관리기능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운행 계통 등의 조정권한을 가지면서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입금”이란 사업자의 요금수입·이자수입·광고수입·기타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4. “수입금 공동관리”란 전체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배분 및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하는 회사에 동일한 기준으로

운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항목별 단가, 지급방식, 지급시기를 정한 체계를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표준운송원가 상 이윤의 일정부분을 유보하여 연1회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분배하는 부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수입금 공동관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을 통해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시내버스의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차량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 시내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지 않아야 하며,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감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시내버스의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와 차량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 채용한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①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사항
2. 수입금 관리·배분에 관한 사항
3. 수입금 잉여분 적립 및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4. 수입금 부족분 충당 및 재정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5.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유류 등의 공동구매, 광고수익사업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업체협의회가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입금 공동관리) 협의회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그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배분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검증을 거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변동되는 비용(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법이나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비용을 포함한다)은 그 해에 산정·반영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무제표나 경영·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실제 지출내역,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제4항에 따라 산정된 당해연도 확정정산 비용을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의 지원) ① 협의회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수입금 현황과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협의회에의 신청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 ③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원에 집행기준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가운데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된 항목에 대하여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감사) ① 사업자는 매년 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업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의 경영상태에 따라 사업자의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조사) ① 시장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 또는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사업자가 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성과이윤의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에게 성과이윤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제3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성과이윤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1년간 성과이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 ① 시장은 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채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운수종사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민·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사업자가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시내버스의 서비스와 안전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위한 대형화 등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안전운행 증진을 위한 시책) ① 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버스의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사업자별 교통법규 위반 현황과 교통사고 및 차량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차량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차량 운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의 기능이나 전동 발판(휠체어 리프트) 등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가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차량의 연료 용기의 상태 점검 등을 통하여 차량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이른바 ‘테이크아웃 컵’)이나 그 밖의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 등을 지닌 여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⑦ 시내버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 시내버스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업자 및 시내버스 운전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제18조(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還收) 또는 감액 처분을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2. 임원의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이 결정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정산을 마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에 따라 사업자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이 결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다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